

# 2020년도 청렴옴부즈만 정기회의(4차-서면심의) 개최 결과

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·조사·평가의 원활한 활동 등을 위해 실시한 청렴옴부즈만 정기회의(서면심의) 개최결과임.

## 1 개요

- 일 자: 2020. 12. 17.(목)
- 방 법: 서면심의 및 개선사항 검토의견 제출
- 인 원: 총 7명(대표옴부즈만 등 7명)
- 내 용: 2020년도 청렴 시책평가 서면심의 등

## 2 심의 결과

- 2020년도 청렴 시책평가 서면심의 결과

구 분	이선배 위원	하명신 위원	손규호 위원	노환주 위원	조상희 위원	김달기 위원	이균우 위원
사회적가치실현팀	62.7	49.3	68.1	62.9	52.7	59.7	53.2
도 로 시 설 팀	58.9	49.1	68.5	65	56.4	58	41.4
자갈치시장사업소	56.4	54.4	68.5	63.3	49.3	58.2	55.8
추모공원사업소	60.3	59.6	66.4	62.2	52	57.2	61.6

- 『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』 내용 개정 의견

▷ 검토 조문: 제6조(구성) 제2항, 제7조 제1항, 제10조

▷ 개정 의견

- (제 6조) 공기업 및 공무원 재직당시 급수 하향 조정(1급→2급, 4급→5급)
- (제 7조) 제1항 “옴부즈만의 활동 중 옴부즈만 전원이 모여서 협의·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를 둔다.”를 “옴부즈만의 활동 중 협의·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이 있는 경우에는 옴부즈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는 옴부즈만 회의를 둔다”로 수정함이 타당
- (제10조) 3호 조항 삭제 -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